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112호

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
일부개정고시

2020. 11. 23.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112호

「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」

일부개정고시

1. 개정 이유

우루과이의 품목 추가 요청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품목을 반영하고, 별표에 수출 가능 품목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수입허용국가의 품목 추가 및 해당 품목의 범위 구체화 (안 별표)
 - 수입허용품목에 우루과이산 ‘어류머리’와 ‘어류내장’을 추가함
 - 별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형식을 변경하고 수입가능품목의 어종 또는 부위 등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함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0조의 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(1) 행정예고 : 공고 제2020-439호(2020. 10. 8. ~ 10. 28.)

(2)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: 비대상 확인(제2020-4400호, 2020.9.15.)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112호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「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-48호, 2019. 6. 19)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3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

일부개정고시

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허용국가 및 품목(제4조 관련)

연번	국가명	품목			
		어류머리 ^{주1)}	어류머리 가식부 ^{주2)}	어류내장 ^{주3)}	연체류내장 ^{주4)}
1	프랑스		○		
2	일본		○	○	○
3	페루		○	○	○
4	필리핀		○	○	○
5	칠레	○	○	○	○
6	우루과이	○	○	○	
7	아이슬랜드		○	○	○
8	에콰도르	○	○	○	○
9	싱가포르		○		
10	러시아	○	○	○	○
11	마크로네시아		○		
12	미국	○	○	○	○
13	모리셔스		○	○	○
14	뉴질랜드		○	○	○
15	노르웨이	○	○	○	○
16	태국		○	○	○
17	인도네시아	○	○	○	○
18	베트남	○	○		
19	중국		○	○	○
20	남아프리카공화국		○	○	○
21	영국		○	○	○
22	우크라이나		○		
23	파나마		○	○	○
24	아르헨티나		○	○	○
25	피지		○		
26	포클랜드군도		○	○	○
27	스페인		○	○	○
28	스리랑카	○	○	○	○

- 주 1) 냉동식용어류머리[대구(*Gadus morhua*, *Gadus ogac*, *Gadus macrocephalus*), 은민대구(*Merluccius australis*), 다랑어류 및 이빨고기(*Dissostichus eleginoides*, *Dissostichus mawsoni*)에 한함]
- 2) 냉동식용어류머리 가식부[모든 어종(복어류 제외)]
- 3) 냉동식용어류내장[모든 어종의 간과 알(복어 간과 알 제외), 창난, 이리(곤이)에 한함]
- 4) 냉동식용연체류내장[오징어 난포선에 한함]